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 절차 마련 (안 제129조의4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운전면허·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에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 운전자 본인 등이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됨('26. 6. 2. 공포, '26. 12. 3. 시행)에 따라, 그 요구 방법 및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

※ 근거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 제137조제5항 및 제6항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하려는 사람은 요구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·도경찰청장,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(안 제129조의4제1항)
- 명의도용, 신분증 위조·변조, 전산시스템 입력 오류 등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가 가능한 사유를 정함(안 제129조의4제2항)
- 정보의 정정·말소의 처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 및 처리 이후 통지 절차와 공단이 접수한 운전자 정보의 시도경찰청으로의 이송 절차 등을 마련함 (안 제129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)

다. 입법효과

- 사실과 다르거나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는 정보가 신속·정확하게 정정 또는 말소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함

라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2. 운전자 정보 정정·말소 관련 서식 마련 (안 별지 제144호의9 및 별지 제144호의10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운전자가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원활하게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, 운전자 정보 정정·말소 요구서 및 운전자 정보 정정·말소 처리 결과 통지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

※ 근거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 제137조제5항 및 제6항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때 사용하는 운전자 정보 정정·말소 요구서 서식을 신설함 (안 별지 제144호의9서식)
- 운전자 정보 정정·말소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사용하는 운전자 정보 정정·말소 처리 결과 통지서 서식을 신설함 (안 별지 제144호의10서식)

다. 입법효과

- 요구사항, 정정·말소 대상 정보 및 증빙자료 등을 표준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함
-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운전자 정보 처리의 신뢰성을 제고함

라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